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김영태 의원 외 1명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: 2023. . .

발 의 자: 김영태, 김근한 의원(2명)

1. 제안이유

정책지원관 배치형태를 기존 사무국형에서 혼합형으로 변경하여 구미시의회 의정환경 변화에 그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정책지원관 배치를 실시하여, 보다 효율적으로 의원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책지원관 배치형태 변경(안 제5조제1항)
 - (기존)사무국형 → (변경)혼합형
- 자구수정 및 항 신설(안 제5조제2항~제4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정책지원관”을 “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<u>정책지원관</u> 을 둔다.	제5조(정책지원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</u> -----.
② 정책지원관은 <u>사무국장의 지휘</u> 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	② ----- 다음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<u>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

-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

-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·도의 의회사무처,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,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- ② 시·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와 같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

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: 6급 이하

2. 시·군·구의 경우 : 7급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